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주식] (A2577)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02-630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4. 2. 28.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 3. 7.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KOSPI 지수 X 100%)*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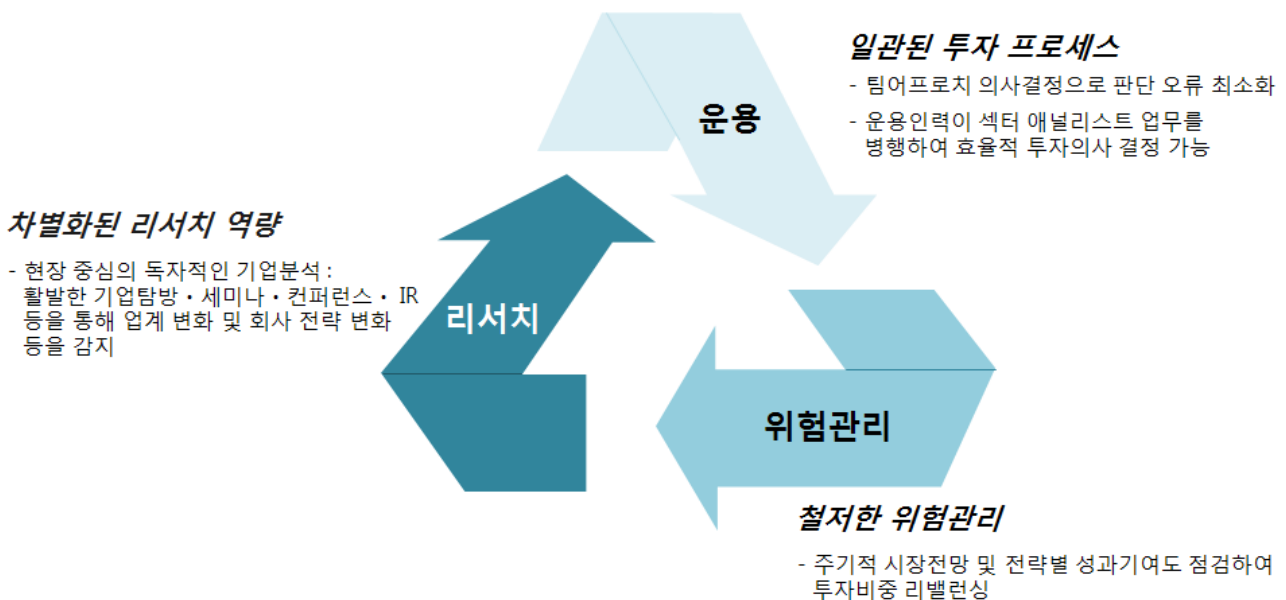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KOSPI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 및 고성장 산업군내 가장 경쟁력 있는 핵심종목 등에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2) 세부 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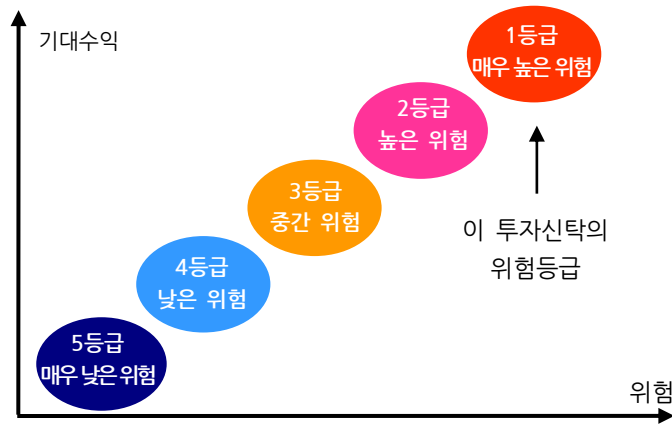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PI 지수 X 100%

3. 주요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주요 운용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체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 2014. 1. 31. / 단위:개,억원)

| 성명 | 출생년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
| 정인기 | 1971년 | 책임 운용역 (상무) | 5 | 5,877 |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력 97.07 ~ 02.05 한화증권 기업분석팀 02.06 ~ 04.10 신영투자신탁운용 투자전략팀 04.11 ~ 09.12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팀 10.01 ~ 11.05 대우증권 Prop. Trading 부 11.05 ~ 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 성명 | 출생 년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
| 안홍익 | 1976년 | 부책임 운용역 (부장) | 15 | 10,377 |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 경력 03.01~05.05 SK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05.05~07.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섹터애널리스트 07.05~09.04 BNP PARIBAS 증권 애널리스트 09.05~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3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 이무영 | 1981년 | 부책임 운용역 (과장) | 5 | 5,877 |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경력 07.12~10.07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운용2팀 10.07~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3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주식운용 3 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 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의 운용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기간 | 12.08.01 ~13.07.31 | 11.08.01 ~12.07.31 | | | |
|--------------|-----------------------|-----------------------|--|--|--|
| 트러스톤제갈공명증권펀드 | 15.71 | -5.66 | | | |
| 비교지수 | 1.70 | -11.78 | | | |
| A | 13.85 | -7.06 | | | |
| 비교지수 | 1.70 | -11.78 | | | |
| C1 | 13.23 | -7.69 | | | |
| 비교지수 | 1.70 | -11.78 | | | |
| C2 | 13.42 | -3.90 | | | |
| 비교지수 | 1.70 | -5.05 | | | |
| Ce | 13.75 | -6.74 | | | |
| 비교지수 | 1.70 | -11.78 | | | |
| W | 0.82 | 0.00 | | | |
| 비교지수 | -3.35 | 0.00 | | | |
| I | 14.78 | 1.13 | | | |
| 비교지수 | 1.70 | -3.18 | | | |

주 1) 비교지수 : KOSPI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 | | | | | | | |
|--------|--|----------|--|--|--|----------------------------|---|--|--|--|
| | A | C1 | C2 | C3 | C4 | Ce | W | I | S | |
| 펀드코드 | A2578 | A2579 | A2580 | A2581 | A2935 | A2582 | A2583 | A2584 | AP845 | |
| 가입자격 | 선취 판매 수수료 징구 | 제한 없음 | C1클래스 수익증권 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C2클래스 수익증권 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C3클래스 수익증권 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판매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 계좌 및 특정 금전신탁 | 집합투자 기구 및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집합투자증권 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 한 온라인 판 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 료가 부과되 는 수익증권 에 가입하고 자 하는 투자자 | |
|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의 1.0% | 없음 | | | | | |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 | | | | | | | |

※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지급 시기 |
|--------------|------------|-------|-------|-------|-------|-------|-------|-------|-------|-------------|
| | A | C1 | C2 | C3 | C4 | Ce | W | I | S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750 | 0.750 | 0.750 | 0.750 | 0.750 | 0.750 | 0.750 | 0.750 | 0.750 | 매 3개월 후급 |
| 판매회사 보수 | 0.900 | 1.500 | 1.250 | 0.990 | 0.900 | 1.000 | 0.000 | 0.030 | 0.350 | |
| 신탁회사 보수 | 0.020 | 0.020 | 0.020 | 0.020 | 0.020 | 0.020 | 0.020 | 0.020 | 0.020 | |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15 | 0.015 | 0.015 | 0.015 | 0.015 | 0.015 | 0.015 | 0.015 | 0.015 | 사유 발생시 |
| 기타비용 | 0.021 | 0.021 | 0.021 | 0.021 | 0.021 | 0.021 | 0.021 | 0.021 | 0.021 | |
| 총 보수 비용(TER) | 1.706 | 2.306 | 2.056 | 1.796 | 1.706 | 1.806 | 0.806 | 0.836 | 1.156 | |
| 증권거래비용 | 0.640 | 0.640 | 0.640 | 0.640 | 0.640 | 0.640 | 0.640 | 0.640 | 0.640 |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5.02 ~ 2013.05.01]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5.02 ~ 2013.05.01]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 구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A클래스 | 277 | 649 | 1,045 | 2,153 |
| C클래스 | 242 | 663 | 1,070 | 2,238 |
| Ce클래스 | 164 | 508 | 876 | 1,909 |
| W클래스 | 85 | 265 | 460 | 1,023 |
| I클래스 | 88 | 274 | 477 | 1,060 |
| S클래스 | 121 | 378 | 655 | 1,443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A 클래스와 C 클래스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나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C 클래스는 수익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 4) S 클래스는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 과세대상 | 과세원칙 | 세율 | 과세시기 |
|------|---------------|--|-------------|
| 투자신탁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 - |
| 수익자 | 원천징수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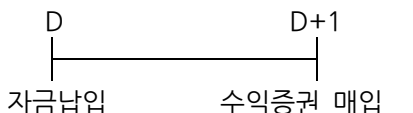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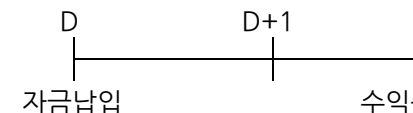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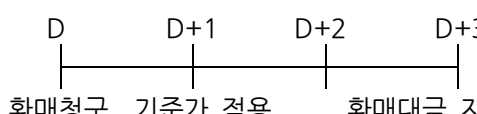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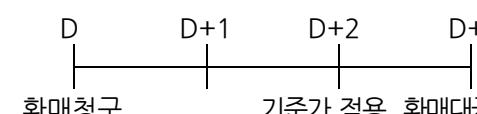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 구분 | 오후 3시 이전 | 오후 3시 경과후 |
|----|--|---|
| 매입 |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
| 환매 |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p>  |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p>  |

4. 전환 절차 및 방법

□ 전환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에 따라 다음 경우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 C1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2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3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 ③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④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①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V. 요약 재무재표

|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제3기(반기) (2013.11.01) | 제2기 (2013.05.01) | 제 1 기 (2012.05.01) |
| 운용자산 | 205,313,855,035 | 139,650,336,555 | 16,616,799,565 |
| 증권 | 204,644,629,780 | 137,336,960,380 | 15,904,260,150 |
| 현금 및 예치금 | 267,295,255 | 17,046,175 | 589,415 |
| 기타 운용자산 | 401,930,000 | 2,296,330,000 | 711,950,000 |
| 기타자산 | 1,618,287,493 | 326,584,439 | 304,746,742 |
| 자산총계 | 206,932,142,528 | 139,976,920,994 | 16,921,546,307 |
| 기타부채 | 1,732,416,238 | 16,782,398,026 | 1,091,799,913 |
| 부채총계 | 1,732,416,238 | 16,782,398,026 | 1,091,799,913 |
| 원본 | 200,527,187,848 | 123,194,522,968 | 16,377,776,212 |
| 이익조정금 | 4,672,538,442 | 0 | -548,029,818 |
| 자본총계 | 205,199,726,290 | 123,194,522,968 | 15,829,746,394 |
|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제3기 (13.05.02-13.11.01) | 제2기 (12.05.02-13.05.01) | 제 1 기 (11.05.02-12.05.01) |
| 운용수익 | 8,108,625,174 | 7,719,141,815 | -49,579,100 |
| 이자수익 | 43,523,992 | 42,183,652 | 9,677,304 |
| 배당수익 | 94,816,266 | 597,962,745 | 157,329,850 |
| 매매/평가차익(손) | 7,948,457,382 | 7,069,600,056 | -229,371,698 |
| 기타수익 | 21,827,534 | 9,395,362 | 12,785,444 |
| 운용비용 | 1,108,657,975 | 572,622,539 | 180,201,431 |
| 관련회사 보수 | 1,102,114,968 | 562,406,989 | 177,488,711 |
| 매매수수료 | 408,721 | 131,570 | 0 |
| 기타비용 | 6,134,286 | 10,083,980 | 2,712,720 |
| 당기순이익 | 6,999,967,199 | 7,146,519,276 | -229,780,531 |
| 매매회전율 | 94.88 | 135.66 | 281.79 |

